

##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 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6. 7. 10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- 아 래 -

회사명	등록번호	등록말소일	소재지	근거법률
케이스톤파트너스 주식회사	제2023-428호	2026.7.6.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, 23층 (여의도동)	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(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)

끝.